

대구지방법원 2021. 6. 22 선고 2020가단12698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현호

피 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재 담당변호사 최진영

변 론 종 결 2021. 5. 25.

판 결 선 고 2021. 6. 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함)에 관하여 2020. 5. 19. 체결된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함)을 25,913,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5,913,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소외 C에게 2017. 2. 8.부터 2019. 4. 10.까지 사이에 수차례에 걸쳐 돈을 대여하여 2020. 6. 8. C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0가소1237호로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한바, 2021. 5. 4. 위 법원에서 원고가 청구한 25,913,000원 중 '11,405,562원 및 지연손해금' 부분만 승소하였고, 동 판결은 2021. 5. 26. 확정되었다.

나. 한편, C은 2020. 5. 19. 남편인 피고와 사이에 자신 소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접수 제79533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에는 근저당권자 D조합, 채무자 피고, 채권최고액 1억 8,8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2020. 5. 19. 위 근저당권이 말소되고 근저당권자 D조합, 채무자 피고, 채권최고액 2억 5,2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새로 경료되었다.

라.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C의 재산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과 각주 1)의 임야 중 1/2 지분이 있었다.1) 위 임야의 2020.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m²당 1,080원으로 C의 지분 가액은 1,927,800원(1,080원×3,570/2)이다.

[인정 근거] 갑 1-1 내지 갑 8,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이 원고에 대하여 대여금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자신의 사실상 전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할 것이므로, 위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이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을 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실제 피고 소유인데 이 사건 증여계약으로 피고가 그 명의를 회복한 것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C과 이혼소송을 진행하던 중 2020. 7. 8. 조정이 성립하였는데 당시를 기준으로 위자료와 재산관계를

정리하면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이 피고 소유임을 전제로 C에 대한 위자료, 재산분할 등 일체의 재산상 청구를 포기한 것인바, 이는 적정한 재산분할이므로 역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실제 피고 소유이었는데 이 사건 증여계약으로 피고가 그 명의를 회복한 것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나 다른 한편, 을 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와 C은 1987. 12. 12. 혼인하였는데 피고가 2020. 5. 28. 대구가정법원 2020드단2795호로 이혼 등 소송을 제기한 사실(C은 반소를 제기하지 아니함), 피고와 C은 2020. 7. 8. 조정기일에 ‘쌍방 이혼한다, 향후 상대방에 대하여 이혼을 원인으로 위자료, 재산분할 등 일체의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아니한다, 상대방의 연금 일체에 대한 분할연금청구권을 포기한다’는 등으로 임의조정이 성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와 C의 혼인기간, 황혼 이혼에 이른 경위, 피고가 위자료 등 청구를 포기한 점, 기타 재산분할의 내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C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및 위자료 명목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재산분할로서 상당한 범위 내의 것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2).

3. 결 론

따라서 이와 반대를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가액배상의 범위에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성금석

별지

부동산의 표시

1. 대구 중구 H 대 165㎡

2. 위 지상

대구 중구 H

[도로명주소] 대구 중구 I

경량철골구조 판넬지붕 단층 근린생활시설 97.88㎡ 끝.

1) C은 그 소유인 대구 중구 E 대 13㎡, 동 지상 목조주택, F 대 26㎡에 관하여 각 2020. 5. 14.

증여를 원인으로 피고에게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한편, 대구 달성군 G 임야 3,570㎡에

관하여 피고와 C은 2014. 11. 24. 각 1/2 지분을 경매로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다.

2)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에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가미된 제도로써,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이혼을 하면서 그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에 의한 취소의 대상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초과 부분에 한하여 적법한 재산분할이라고 할 수 없어 취소의 대상으로 될 수 있을 것이나, 이처럼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다14101 판결, 2006. 9. 14. 선고 2006다33258 판결, 2016. 12. 29. 선고 2016다249816 판결 등 참조).